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2 - 1 - 140>

제1장 총 칙 ····· 2
제2장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 2
제3장 경영시스템 ····· 5
제4장 부 록 ····· 6
제5장 부 칙 ····· 6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차례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목적】 ····· 2
제2조【적용범위】 ····· 2

제2장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제3조【윤리헌장】 ····· 2
제4조【임직원 윤리】 ····· 3
제5조【공정한 경쟁과 거래】 ····· 3
제6조【고객가치 실현】 ····· 4
제7조【임직원 존중】 ····· 4
제8조【지속가능성 추구】 ····· 5

제3장 경영 시스템

제9조【조직의 구성 및 운영】 ····· 5

부 록

제1조【담당연락처 및 참고문헌】 ····· 6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목적】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서 인류사회의 꿈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 윤리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바,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였다.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의 적용대상은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를 포함하며,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회사는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 정책,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관련 규정, 정책, 지침 등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은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제3조 【윤리헌장】

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3.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5.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제4조 【임직원윤리】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1. 뇌물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2. 청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3. 이해관계 상충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4. 내부자 거래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2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윤리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6. 직권남용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7. 문서작성 및 보고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8. 뇌물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9. 내부자 거래에는 흔히 회사의 기밀, 지식, 영업정보, 인수합병과 같은 조직정보, 주가 관련 정보, 내부 의사결정사항 등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5조 【공정한 경쟁과 거래】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1. 반독점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담합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3. 부정경쟁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4. 자금세탁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지식재산권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조세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7. 조달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영

제6조【고객가치실현】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1. 고객 안전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및 유통,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2. 품질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완전한 정보제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4.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고객의견 수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6. 고객 접근성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제조물 책임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제7조【임직원존중】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1. 인권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3. 차별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4. 동등한 기회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5. 직장 괴롭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 · 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6. 안전 및 보건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7. 일 · 가정 양립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성 추구】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2. 환경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3. 사회공헌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이해관계자 참여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5. 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6. 주주가치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7. 정보공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제3장 경영 시스템

제9조 【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조직 책임자의 책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조직 및 보고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모니터링 및 실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내부통제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24 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내부 고발자 보호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6. 개정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해야 한다.
7. 교육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8. 처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9. 위반 정보공개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4장 부 록

제1조【담당연락처 및 참고문헌】

1. 윤리 관련 상담 및 제보처리 창구
   - 인터넷 제보: www.spsemi.co.kr / syjeong@spsemi.co.kr
   - 전화 : 032 - 680 - 7700
   - 팩스 : 032 - 680 - 7703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832번길 30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 경영지원팀
2. 참고문헌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은 여러 국제 인권규범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며, 아래의 선언 및 협약을 기반으로 제정하였다.

   ①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세계인권선언), UN General Assembly, 1948.
   ②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③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LO (1998).
   ④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2019).
   ⑤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General Assembly (2013).
   ⑥ Paris Agreement, UNFCCC (2015).
   ⑦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2011).
   ⑧ 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 Drive Sustainability (2017).
   ⑨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C (2011).
   ⑩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2010).
   ⑪ UN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⑫ CDP (https://www.cdp.net/en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인권헌장

<2 - 1 - 130>

제1장 총　　칙 ····· 1
제2장 기본원칙 ····· 3
제3장 시스템구축 ····· 5
제4장 리스크관리 ····· 7
제5장 부　　록 ····· 9
제6장 부　　칙 ····· 10

인권헌장 차례

제1장 총 칙

제1조【인권헌장 제정목적】 2
제2조【인권헌장 적용범위】 2
제3조【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3

제2장 기본원칙

제4조【차별금지】 3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3
제6조【근로조건 준수】 4
제7조【인도적 대우】 4
제8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제9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4
제10조【산업안전 보장】 4
제11조【지역주민 인권 보호】 4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5

제3장 시스템 구축

제13조【거버넌스 구축】 5
제14조【고충처리 절차 운영】 6
제15조【교육 및 확산】 7

제4장 리스크 관리

제16조【리스크평가】 7
제17조【리스크개선이행】 8
제18조【현황 및 결과 공시】 9

제5장 부 록

제19조【담당연락처】 9
제20조【참고자료】 10

제6장 부 칙

제1조【시행일】 10

제1장 총 칙

제1조【인권헌장 제정목적】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2조【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의 인권경영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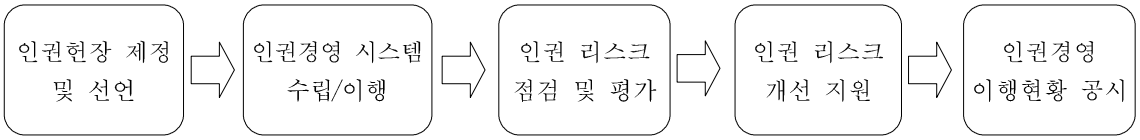

제2장 기본원칙

제4조【차별금지】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확인된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제5조【직장내 괴롭힘 금지】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제6조【근로조건 준수】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7조【인도적 대우】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8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9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산업안전 보장】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11조【지역주민 인권 보호】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

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시스템 구축

제13조【거버넌스구축】

① 인권경영 책임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최고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 현황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의 역할과 책임 범위는 1) 인권경영 헌장의 제•개정 검토, 2) 인사제도, 취업규칙, 감사표준 등 관련 내부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인권 리스크 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4)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지시 및 구제방안 심의, 5)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이행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이행해야 할 업무는 업무는 1) 인권헌장의 제•개정, 2)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 3) 인권 리스크 평가, 4) 고충처리 채널 운영, 5) 내부 교육 및 보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고충처리 절차 운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인도적 대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등을 포함한 인권 침해 이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접수 및 신고 처리 절차를 운영합니다.

① 인권침해 신고 • 접수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② 인권침해 신고 처리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관행, 기타 인권침해 신고 채널

➢ 부서명 : 경영지원팀　　➢ 이메일 : syjeong@spsemi.co.kr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지원부서(인사팀)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 명성 • 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③ 신고인 신분보장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15조【교육 및 확산】

① 인권경영 교육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② 인권경영 확산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헌장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정보를 현대자동차 내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 기타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 방법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인권경영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채널(음성, 영상, 서면 등)과 방식(국문, 영문 등)을 이용한다.

제4장 리스크 관리

제16조【리스크평가】

① 평가지표 개발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본 인권헌장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 등을 반영하여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력운영, 산업안전, 지역주민 및 고객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 및 실사 지표를 개발 및 운영한다.

② 평가프로세스 운영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본 인권헌장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 발생 현황과 잠재적 인권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프로세스를 운영한다. 평가대상에게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서면점검(Self Assessment)하며, 평가대상이 자가진단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내부규정 및 시스템 확인, 인터뷰 및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리스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실사(On-site Due Diligence)를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서면점검 및 현장실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 기관을 통한 별도심사(3rd Party Audit)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점검 • 현장실사 • 제3자심사를 통해 발견된 '고위험'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개선이나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각 계열회사는 인권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및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한다.

제17조【리스크 개선 이행】

① 개선방안 도출 및 협의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 리스크에 대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본사와 국내 • 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공급자 및 판매 • 서비스 업체, 기타 거래 관계에 조직 등은 리스크를 개선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평가대상 선정 서면점검 현장실사 제3자 심사 개선계획 요구

② 이행현황 모니터링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조직의 업무 담당자 등이 상호협의한 개선방안을 성실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세부과제 실행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예상 산출물이 적시에 확보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며,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현황 및 결과 공시】

① 주요 의사결정권자 보고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의미한 시사점과 중요한 리스크 및 개선방안을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를 포함한 주요의사결정권자 등에 보고 한다. 위원회나 경영회의, 주요 의사결정권자 등에서 승인을 받은 보고자료는 인권경영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서 등과 공유할 수 있다.

② 대외 공시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는 인권침해 신고 사례,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개선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통합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인권백서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하며,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시채널을 선택한다.

제4장 부 록

제19조【담당 연락처】

에스피반도체통신주식회사 인권헌장 담당

부서명 : 경영지원팀

이메일 : syjeong@spsemi.co.kr

제20조【참고자료】

국내•외 인권표준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인권 관련 조항과, 표준 및 이니셔티브을 바탕으로 본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①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② UNGC, A human Rights Management Framework (2010)

③ U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④ OEC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2011)

⑤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⑥ 대한민국헌법

⑦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2018)

⑧ 국가인권위원회, 기관(기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018)

⑨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 (2019)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